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37
----------	-------

발의연월일 : 2026. 6. 17.

발 의 자 : 이훈기 · 최민희 · 김남근
김 윤 · 전진숙 · 황운하
민병덕 · 허 영 · 김현정
복기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파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정 당시와 달리, 오늘날은 위치기반서비스는 교통, 배달, 금융, 전자상거래, 통신, 플랫폼 서비스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도 단독으로 처리되기보다 성명, 연락처, 단말기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화되고 있음.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의 이동경로, 생활반경, 방문장소 등을 드러낼 수 있는 정보로서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임. 다만, 대량의 데이터가 결합·연계되어 처리되는 오늘날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는 개인위

치정보의 일반적 처리절차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절차와 달리 별도로 규율할 실익이 크지 않음. 오히려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해 각각의 법률에 따라 별도의 동의, 고지, 통지, 파기, 열람·정정·삭제 요구 절차를 두는 것은 수범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특히 2020년 2월 4일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 규율을 「개인정보 보호법」 중심으로 통합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일원화하는 방향이 추진되었음.

그러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파기, 정보주체 권리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은 그대로 존치되어 있음. 그 결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낮추고, 사업자의 규제 부담과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이용·제공의 제한, 처리방침 공개, 사업 양도 등의 통지, 파기,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인 제16조,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를 삭제하고자 함. 이를 통해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은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중복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 제17조의2 · 제18조 · 제21조 · 제21조의2 · 제22조 및 제23조 삭제 등).

법률 제 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및 제1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 제2절(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제22조 및 제23조)을 삭제한다.

제24조 앞의 “제3절 개인정보주체 등의 권리”를 “제2절 개인정보주체 등의 권리”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u></p> <p>① <u>위치정보사업자들은 위치정보의 유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② <u>위치정보사업자들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③ <u>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상태</u></p>	<p><삭 제></p>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기록의 보존 상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의2(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삭 제>

제2절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삭 제>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삭 제>

1.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
리인(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
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
는 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
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
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③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
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
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
야 한다.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 <삭 제>

는 제공)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은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 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 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
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
부와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유
보할 수 있다.

제20조(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

<삭 제>

치정보 제공 등) ① 제19조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
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
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개인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
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

<삭 제>

· 제공의 제한 등) 위치정보사

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에 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삭 제>

야 한다.

1.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2.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3.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4.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삭 제>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또는 상속 등(이하 “양도 등”이라 한다)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등의 사실
2. 위치정보사업자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삭 제>

① 위치정보사업자들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16조 제2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들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는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의 파기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기술

제2절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삭 제>

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를
과기하여야 한다.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위

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제1항, 제1
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1조
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
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
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야 한다.

② 제18조제2항·제19조제5항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
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
인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삭 제>

1. (현행과 같음)

<삭 제>

손 또는 공개한 자

3.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제2항·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5. ~ 6. (생략)

제40조의2(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삭 제>

<삭 제>

5. ~ 6.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1조(벌칙) -----

-----.

1. (현행과 같음)

2. (생략)

3. (생략)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4의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되도록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경보발송을 거부한 자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4.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자

5.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시적인 중지 요구를 거절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5.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또는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5.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 관명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

7.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1조의2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도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②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p><u>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과기하지 아니한 자</u></p>	
<p>9. <u>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열람, 고지 또는 정정요구를 거절한 자</u></p>	<p><삭 제></p>
<p>10. <u>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u></p>	<p><삭 제></p>
<p>11. ~ 15. (생략)</p>	<p>11. ~ 15. (현행과 같음)</p>
<p>③ ~ ⑧ (생략)</p>	<p>③ ~ ⑧ (현행과 같음)</p>